

인증 절차 및 방법



제출서류

구비서류	구분	430㎡ 미만 어린이집	430㎡ 이상 어린이집·유치원
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¹⁾		○	○
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서 ²⁾		○(없을 경우 측정지원)	○
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³⁾		○	○

- 1)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: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통보서, 환경유해인자 시험·검사 기관 성적서,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진단 결과통보서
- 2)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서 : 인증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서
- 3)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: 석면조사 결과서,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통보서 (단, 09년 이후 설립된 시설은 건축물대장으로 대체 가능)

문의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실
 대표전화 : 1670-5280(콜센터), 2284-1821
www.eco-playground.kr / www.chemistory.go.kr



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,
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으로
 확인하세요!!





**어린이 활동공간
환경안심 인증이란?**

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
어린이집,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
중금속, 실내공기질, 석면건축물 등
환경안전기준 준수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
환경적으로 **쾌적하고 안전하다고** 인정해주는
어린이활동공간 **환경안심 인증 제도**를
운영하고 있습니다.

근거법

환경보건법 제23조의 4 및
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8

인증기간

3년(갱신가능)
▷ 갱신신청은 인증기간 만료일 120일 이전부터
30일 이전까지 인증기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에 서류 제출

인증기준

환경안전관리기준, 실내공기질, 건축물석면,
행정처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
(환경안심 인증 세부기준 참고)

사후관리

인증받은 모든 시설 대상(3년에 1회 이상)
▷ 인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실시
▷ 인증기준 준수 여부 주기적 관리

환경안심 인증 세부기준('19.12.31)

분야	항목	세부기준
환경안전 관리기준 (환경보건법)	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	활동공간 내 모든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
	도로나 마감재 중금속	• 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.1% 이하이어야 함 • 납이 질량분율로 0.06% 이하이어야 함
	실내공간의 오염물질방출	도로나 마감재료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	목재의 방부제	목재에 사용금지된 방부제*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*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, 크롬구리·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1호, 2호, 3호 등
	토양 중금속	카드뮴, 비소, 수은, 납, 6가 크롬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
	기생충(란)	기생충(란)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
	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	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.1% 이하이어야 함
	합성고무바닥재 폼알데하이드	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mg/kg 이하이어야 함
	실내공기질	• 폼알데하이드 80 μ g/m ³ 이하 •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μ g/m ³ 이하
실내공기질* (실내공기질관리법)	실내공기질	• 미세먼지(pm10) 75 μ g/m ³ 이하 • 미세먼지(pm2.5) 35 μ g/m ³ 이하 • 이산화탄소 1,000ppm 이하 • 폼알데하이드 80 μ g/m ³ 이하 • 총부유세균 800CFU/m ³ 이하 • 일산화탄소 10ppm 이하
건축물석면 (석면안전관리법)	건축물 석면조사	석면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,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
기타	행정처분	인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환경안심인증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

*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430m²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

